《 2018년 7월 경상남도 반상회 홍보목록 》

연번	홍 보 자 료	도 담당부서
1	여름철 복병,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합시다	보건행정과
2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른 예방관리 안내	보건행정과
3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4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	여성가족정책관
5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문화예술과
6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환경정책과
7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마지막 기회!!	재난대응과
8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수질관리과
9	무더위를 식혀줄 경남 여름축제 안내	관광진흥과
10	2018년 7월 국정홍보만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문화예술과
11	2018년 7월 국정홍보만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통방지 홍보)	문화예술과

여름철 복병,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합시다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24)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바닷물, 갯벌, 어패류에 주로 서식하는 세균

○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률 50% 이상

○ 바닷물 수온이 18℃ 이상이 되는 여름철(6월~9월)에 환자 주로 발생

○ 감염시 발열, 오한, 복통, 구토와 피부에 수포를 형성하여 조직 괴사 일으킴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전국 대비	사망자수	
	전국	경남		전국	경남
2015년	37	4	10.8 %	4	3
2016년	59	9	15.3 %	12	2
2017년	47	3	6.4 %	23	2

※ 2018년 올해 6월 인천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전국 첫환자 발생

□ 비브리오패혈증 감염경로

○ 해산물 등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우려

○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없음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요령

○ 해산물 등 어패류는 반드시 5℃ 이하로 저온 보관 (균의 증식 방지)

○ 생선회 등 생식으로 먹는 것을 자제하고 85℃ 이상 끓여서 섭취

○ 어패류를 조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깨끗이 소독하여 보관

○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겨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삼가야 함

□ 주의 사항

만성 간질환, 당뇨병, 알콜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분들은 고위험군으로서 감염시 사망률이 50% 이상임으로 반드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 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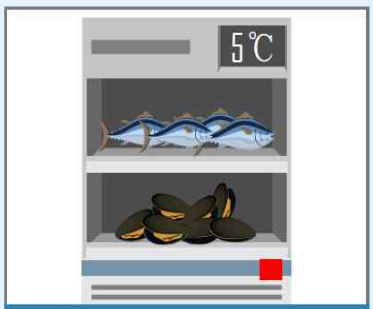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합니다.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 특히,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환자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른 예방관리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23)

□ 일본뇌염 경보발령 현황

○ 경보 발령일자 : '18. 7. 6.(금), 질병관리본부

※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 경보 발령기준 : **전체 모기 중 매개모기가 50%이상, 환자발생시**

□ 일본뇌염 경보 발령기준

○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채집될 시

○ 경보 발령 : 다음 5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

– 생후12개월~12세 어린이는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예방접종

–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일본외염 유행국가 여행자, 돼지축사 인근 등 위험지역 거주자)일 경우 유료 예방접종 권장

※ **일본뇌염 유행국가**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지역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가정내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취침시 모기 회피용품 사용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

– 외출시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 착용하여 피부노출 최소화

– 야외에서 풀숲, 물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않을 것을 권고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여성가족정책관 ☎ 055-211-2264)

□ 아동수당 개요

○ 지급대상 :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

*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
(계산 방법 :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계좌 입금 원칙

○ 지급대상 : 169,867명(경남도)

○ 시행일정 : 6월 20일 사전신청 → 9월 21일(금) 첫 급여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스마트폰) 신청

○ 아동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가 신청

○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참고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주요내용

○ (선정기준)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市) 지역 85백만원, 군(君) 72.5백만원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1.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2.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3.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 (다자녀 소득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 공제

○ (맞벌이 소득공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맞벌이 공제(안) 예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50만원	월 750만원
사례 2	월 800만원	월 2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만원	월 800만원

○ (소득·재산조사 면제)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

(자료제공: 여성가족정책관 ☎ 055-211-2255)

□ 디지털성범죄란?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촬영 시에는 동의하였지만 사후에 동의 없이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

※ 몰래카메라 촬영, 몰래카메라촬영물 유포,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 등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구분	행위	벌칙	관련법령
가해자 (행위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몰래카메라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몰래카메라촬영물 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합의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개인간 성적 영상물 유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 항
	영리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영리 목적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음란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제74조제1항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음란한 영상물 유포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제3항, 제73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1366(☏055-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women1366.kr, 02-735-8994)

- 삭제서비스 지원 : 유포피해 검색·수집 및 삭제요청 지원
- 수사 지원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증거수집) 지원
- 법률 지원 : 불법촬영, 불법영상물 유포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민·형사 등 소송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피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상담 지원 : 피해상황 파악,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안내 등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붙 임 디지털성범죄 예방 리플릿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가해자 처벌 강화

과제명	현 행
연인간 복수 목적 등으로 특정 부위, 행위가 촬영된 영상물 유포	다른 사람 신체 촬영·유포죄 (징역 3~5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종합서비스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초기대응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

▶ **종합서비스**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긴급 삭제 지원('18. 1 ~)
- 방심위 심의 연계
- 사후 모니터링('18. 1 ~)
- 전문상담, 의료비 지원, 보호시설 입소지원 및 무료 법률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 게시판 및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유포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및 방법

온라인 상담 안내 (상시 이용 가능)	전화 상담 안내 (평일 10:00~17:00)
www.women1366.kr 비공개 게시판 상담 신청	02)735-8994 전화 접수를 통한 상담 신청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신고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055-1366 (365일 24시간 운영)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055) 233-2694, 2598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

불법촬영 Out!	탈의실, 계단, 화장실, 대중교통 등에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유포 Stop!	연인간 복수 목적 등으로 특정 부위, 행위가 촬영된 영상물 유포는 범죄입니다.
클릭 Zero!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E-mail: kyungnam1366@hanmail.net
http://www.women1366.or.kr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055-1366 (365일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추방주간 (2018. 06. 18~06. 29)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

"불법영상,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경상남도 | 경상남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자료제공: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055-211-4514)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을 비롯하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영화, 공연, 전시를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분 야	혜택 내용
영화	ㅇ전국 영화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매월 400개 관 내외)에서 영화(2D)를 5,000원에 관람(오후 5시~9시)
공연	ㅇ연극·뮤지컬, 음악·연주회, 무용 등 공사립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 무료·할인 혜택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시	ㅇ공사립 미술관·박물관 전시 무료·할인 관람, 연장 개관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ㅇ도서 대출 권수 확대, 연장 개관 및 교육·체험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문화시설 행사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 안내 누리집 (http://www.culture. 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055-211-6646)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머그컵, 텀블러 등을 사용하고, 마트 이용 시에는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추진 배경

○ 지난 4월 일부 아파트 단지의 비유가 재활용품(폐비닐 등) 수거 중단 문제 발생으로 유사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의 성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주요 내용

○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에서 머그컵, 유리컵, 텀블러 등 사용

○ 마트나 편의점 등 이용 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 여행 등 가족 모임에 다회용품(컵, 용기 등) 사용

○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에서는 다회용 용기를 이용하여 음식 등을 제공

○ 마트 및 편의점 등의 사업자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등

❑ 홍보사항

○ 각종 행사, 회의 시 교육 및 홍보 실시

○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적극 홍보 실시

붙임 **1회용컵 사용 줄이기 홍보 포스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마지막 기회!!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재난대응과 ☎ 055-211-2844)

´18. 8.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하여 9월부터 과태료 부과(30만원이상, 최고 300만원)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으로 대상시설·보상한도액 등 규정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 및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장치

< 주 요 내 용 >

▸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붙임 참고)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 가입시기 :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작년 7. 7일 까지

※ 과태료 부과 유예 :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계도기간 운영, 금년 8.31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9월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부과(기존시설 : 300만원)

○ **가입의무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임차인)**
-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

○ **경남도 가입현황**

- 5월 말 기준, 전체 대상시설(15,904개소)의 94.82% 정도(15,080개소) 가입하였고 그 중 80~90%가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해당함.

○ **보험료**

-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그에 비해 보장 범위는 매우 큰 장점이 있음.

○ **보상사례**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경기도 모 1층 음식점은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화재발생으로 8천4백만원의 대인보상(133명 부상), 1천1백만원의 대물보상을 받았으며, 서울 모 숙박시설은 1만8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7억5천만원 이상의 대인보상(사망 5명)을 받은 바 있음.

※ 붙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19종 현황 1부.

붙 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19종) 현황

○ **주요시설 : 1층 음식점(10,984개소), 숙박업소(2,874), 주유소(1,112), 15층 이하 아파트(528) 등**

소관부처	관련법령	시설유형	대상시설 (개소)
계	**17개 법령**	**19종 시설**	**15,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6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2
		미술관	0
	도서관법	도서관	18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특수건물로 제외)	0
	경륜·경정법	경륜장	0
		경정장(국유시설로 제외)	0
		장외매장	0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2,874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6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1
		장외발매소	0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	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주유소	1,112
해양수산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	129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24
	도로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상가	0
	주택법 시행령	15층 이하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5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 이상)	10,984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자료제공: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055-211-6735)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사전신고 및 철저한 수질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Ⅰ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계류시설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

Ⅱ. 설치·운영신고 및 관리 대상은?

- 공공시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시설
- 민간시설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설치·운영하기 15일전까지 신고

Ⅲ.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 : 5.8 ~ 8.6
- 탁 도 : 4NTU 이하 ※ NTU(nephelometry turbidity unit)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 0.4 ~ 4.0mg/L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관리기준

- 수심을 30cm이하 유지
- 운영기간 중 상시 소독 및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실시
-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수질검사 결과 등을 안내·게시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등 수질검사 실시

⇒ 신고 및 수질, 관리기준 위반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이용자 협조사항

- 음용 금지
- 물놀이형 기저귀 착용
-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 음식물, 이물질(유리 등) 반입 금지
- 외출용 신발 금지(물놀이용 신발 착용)
- 애완동물 진입 금지
- 구토·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금지

(참고자료)

환경부
깨끗하고 즐거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설치 · 운영 신고
- 설치 · 운영 15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 운영기간 중에는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공표합니다.
- 수심은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을 수시로 제거합니다.
- 주 1회 이상 저류조를 청소하거나 1일 1회 이상 여과기에 여과합니다.
- 소독제를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소독합니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계류시설
벽천
들어가면 안돼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니에요.
울타리
표지판
출입을 제한하는 관리인
함께 쓰는 시설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음용 금지
물놀이용 기저귀 착용
대소변이나, 침 뱉는 행위 금지
애완동물 진입 금지
구토 · 설사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 · 피부병이 있을 경우 이용금지
음식물, 이물질(유리 등) 반입 금지
외출용 신발 금지 (물놀이용 신발 착용)

무더위를 식혀줄 경남 여름축제 안내

(자료제공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055-211-4643)

시군	축제명 (장소)	개최기간	주요 프로그램	문의처
함안군	**강주해바라기축제**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7.21~8.5 (16일간)	해바라기꽃 단지, 해바라기 벽화길, 포토존, 지역 농특산물 및 먹거리 판매 등	580-4403
산청군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산청 경호강 일원)	7.21~7.22 (2일간)	은어 및 쏘가리 낚시대회, 경호강 래프팅 대회 및 체험, 수상놀이기구 체험 (수상자전거, 투명카약, 수중범퍼카), 농악경연대회 등	970-6401
사천시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	7.25~7.29 (5일간)	맨손 전어잡기, 전어 먹기 대회, 전어 퀴즈쇼, 전어 무료 시식회 등	831-3111
거제시	**바다로세계로** (거제 구조라, 학동, 와현 해수욕장 일원)	7.26~7.29 (4일간)	블루콘서트, 해양스포츠(비치풋살 챔피언십, 수상오토바이 대회, 전국핀수영대회), MBC 경남 정오의 희망곡, 키즈슬라이드파크 등	639-4173
김해시	**허왕후신행길 축제** (김해시 해반천 및 가야의거리 일원)	7.27~7.29 (3일간)	허왕후 신행길 퍼레이드 공연, 타운파티, 수전놀이, 아시아문화체험 등	330-3243
고성군	**당항포대첩축제** (고성 당항포관광지 일원)	7.27~7.29 (3일간)	당항포대첩 등 이순신관련 영상물 상영, 이순신 가면 만들기, 활쏘기, 거북선 그리기 등	670-4507
합천군	**합천바캉스축제** (정양레포츠공원)	7.27~7.31 (5일간)	맨손은어잡기, 황강패밀리 컬러레이스, 지상최대의 물싸움, 대형 물놀이장, 목재카누체험 등	930-4666
합천군	**고스트파크** (합천영상테마파크)	7.27~8.19 (24일간)	호러 어트랙션(6종), 미니어트랙션(3종) 고스트 나이트, 고스트 매직쇼, 고스트 올림픽, 쇼미더 고스트(힙합 공연) 등	930-3752
하동군	**가로내여름축제** (횡천강 일원)	7.28~7.29 (2일간)	피서객과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회, 소망기원문 달기, 시화전 전시 등	880-6144
고성군	**촌스런축제** (고성군 영현면 영동둔치공원)	8.3~8.5 (3일간)	촌스런 콘서트, 촌스런 극장, 다슬기잡기, 피리잡기, 봉숭아꽃물들이기, 떡메치기 등	670-2203
산청군	**대포숲음악회** (산청군 삼장면 대포마을)	8. 4	숲속 음악회, 활쏘기, 봉숭아 물들이기, 떡메치기, 마을특산물 판매 등	970-6151
통영시	**통영한산대첩축제** (통영시 일원)	8.10~8.14 (5일간)	한산대첩 재현, 이순신 장군 행렬 및 군점 재현, 한산대첩 출정식, 이순신 학교 운영 등	650-4532
통영시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봉암마을)	8. 25	맨손고기잡기, 바다보물찾기 및 바지락캐기, 후리그물 고기잡이, 통발고기잡이 체험 등	650-4534

2018년 7월 국정홍보만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과 ☎ 044-203-2932 / 자료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34

2018년 7월 국정홍보만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통방지 홍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제 그만!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3